

**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**  
**일부개정법률안**  
(허은아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4392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2.

발 의 자 : 허은아 · 이만희 · 최영희  
서일준 · 윤상현 · 金炳旭  
백종헌 · 장동혁 · 지성호  
류성걸 의원(10인)

**제안이유 및 주요내용**

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한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, 약칭 「단말기유통법」이 시행 중임.

그러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, 수출 시 분실·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, 내수용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 요건을 규정한 내용은 없어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,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가격책정 혼선 등 이용자의 불안 및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의 양성화·활성화, 이용자 신뢰 제고, 합리적인 소비권 보장을 위해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도

입 및 전문기관 지정 등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및 제 19조).

##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) ① 과학기술정보

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이하 “안심거래 사업자”라 한다)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

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
3.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·절차 및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 제목 중 “위임”을 “위임·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9조의2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|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업자(이하 “안심거래 사업자”라 한다)가 같은 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안심거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심거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한 경우
3.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⑥ 그 밖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기준·절차 및 인증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19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| <p><u>준 유지 여부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1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